

# 민영연금 활성화를 위한 OECD 국가들의 전략

최종균  
보건복지부 OECD본부 파견관

## 1. 들어가며

2003년 국민연금 재정재계산으로부터 시작된 연금 개혁안 논의가 지난 7월 3일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그 기나긴 여정에 마침표를 찍었다. 이번 연금 개혁의 핵심은 기초노령연금제도의 도입보다는 급여율의 하락을 가져온 국민연금법 개혁에 있다. 현행 소득대체율 60%는 내년 50%를 거쳐 2028년까지 40% 수준으로 하락하게 된다. 20년 후면 연금수준이 2/3로 줄어들며, 현 근로세대의 많은 수가 이의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실 가입연수는 평균 20년 정도로 예측되므로 실제 손에 쥐게 될 연금액은 명목상으로 제시되는 소득대체율 40%의 반 정도가 될 것이다.

이러한 연금개혁의 내용이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 공적부조 방식의 기초노령연금제도가 있기는 하지만, 수급 조건을 보건대 일정수준 이상의 연금을 받게 될 중산층 이상은 향후 혜택을 보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지금 근로세대는 자신의 노후에 대하여 공적연금으로부터 기대할 몫이 줄어들며 부동산 투자든 주식 투자

든 개인이 책임져야 할 몫이 커지게 된다. 여기서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민영연금(private pensions)이다. 연금이 성숙단계에 들어섰고 이미 고령화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는 선진국들은 공적연금의 급여수준을 계속 줄이고 있으며, 반대로 기업연금이나 개인연금 등 민영연금의 역할을 늘리기 위한 제도적 노력을 지속적으로 펼쳐오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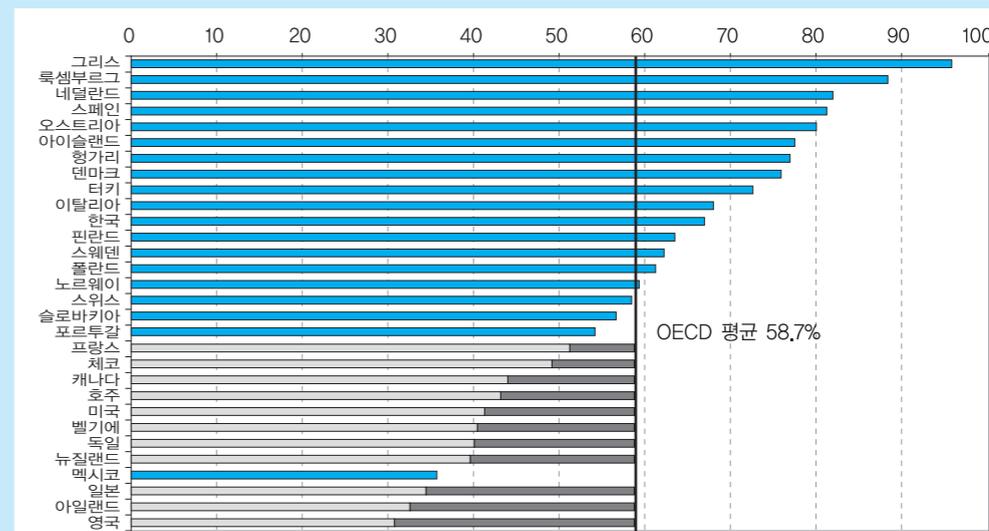
우리나라 역시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저축이라는 민영연금제도를 가지고 있으나, 짧은 도입역사 등으로 인하여 이렇다할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글은 우선 선진국에서 왜 민영연금의 역할을 부각시키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지 그 필요성을 살펴봄으로써 정책적 노력의 시급성을 진단해 보고자 한다. 아울러 각국의 민영연금 운영실태와 민영연금 활성화를 위한 각종 정책적 노력을 고찰함으로써 우리나라에 줄 수 있는 시사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 2. 민영연금 활성화의 필요성<sup>1)</sup>

고령화 진전에 따른 연금재정의 압박 하에 이루어진 그간의 연금개혁 결과에 따라 많은 OECD 국가들에서 강제연금<sup>2)</sup> 급여율이 하락함에 따라 이의 보충이 필요하다. 90년대 연금개혁이 이루어진 16개 OECD 국가<sup>3)</sup>에서 평균 소득자가 받는 연금의 소득대체율은 개혁전 66.9%에서 55.8%

로 하락하였다. 퇴직연령 연장 등을 감안한 연금 자산(pension wealth) 측면에서 살펴보면 20% 이상의 삭감이 있었던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각국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고령화 추세를 감안하면 연금재정의 지속가능성 유지를 위하여 이러한 추세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노후소득에서 강제(공적) 연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들에 따라 사람들은 이를 민영연금으로 보충하거나 아니면 노

그림 1. OECD 국가 강제연금의 평균 소득대체율



출처: OECD Pensions at a Glance (2007).

1) 이 부분에 대한 서술은 OECD의 '한눈에 보는 OECD 각국의 연금제도(Pensions at a Glance)' 2007년판에 수록된 '미래의 노후소득보장에 관한 민영연금의 역할(the role of private pensions in providing future retirement incomes)'이라는 논문을 많이 참조하였다.  
2) 강제연금(mandatory pension)이란 공적연금(public pension)과 법에 의하여 사용주의 제공의무가 강제되는 기업연금과 같은 강제민영연금(mandatory private pension)을 총칭한다. 이의 반대말은 임의민영연금이다.  
3) 16개 국가는 오스트리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헝가리, 이탈리아, 일본, 한국, 멕시코, 뉴질랜드,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스웨덴, 터키, 영국을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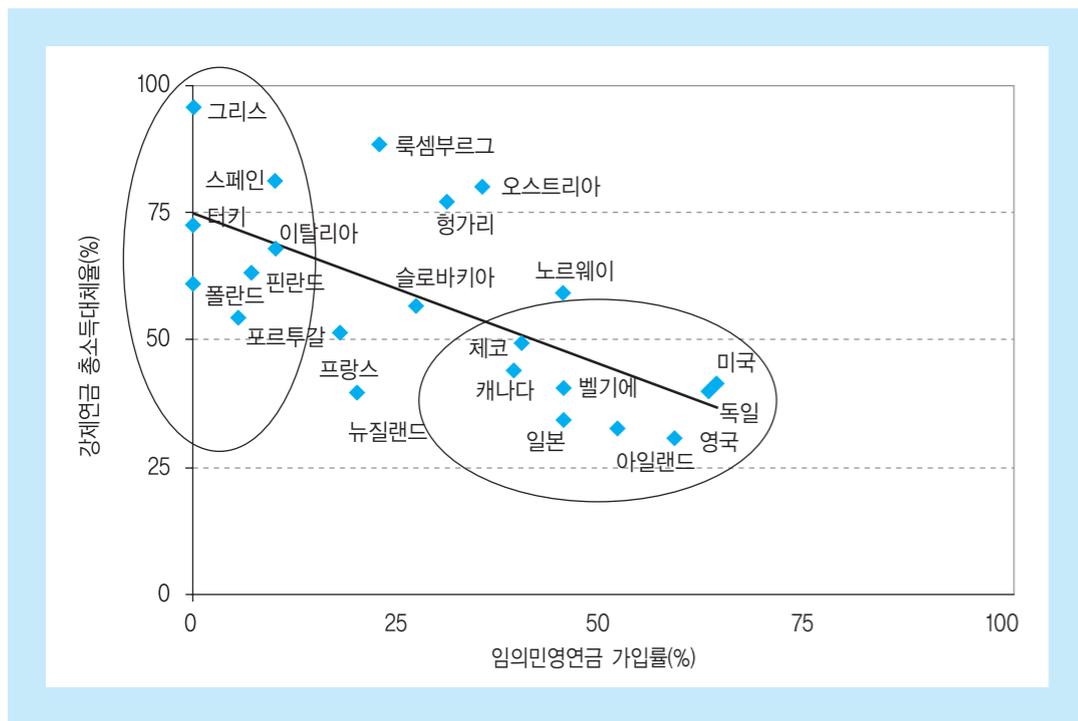
후생활수준의 하락을 감내해야 한다.

민영연금이 필요하다고 하면, 필요한 민영연금의 수준은 어느 정도가 될까? 2004년 기준으로 전체 30개 OECD 국가를 대상으로 살펴보면 평균 강제연금 소득대체율은 58.7%로, 영미계 국가를 중심으로 1/3이 넘는 국가가 평균에 미달하고 있다(그림 1). [그림 1]에서 하위권 11개 국가(회색 표시)의 평균 소득대체율은 40.6%로 평균까지의 “부족분” 18.1%는 민영연금 등 다른

수단에 의하여 충족될 필요가 있다. OECD는 평균소득대체율과 각국 소득대체율 차이(적색 표시)를 “퇴직소득 부족분(retirement-savings gap)”이라고 정의하고 민영연금 필요성 분석의 준거틀로 사용하고 있다<sup>4)</sup>.

실제로 보면 강제연금의 소득대체율이 낮은 나라에서 임의 민영연금 가입율이 높은 상관관계가 나타나 민영연금의 필요성을 부각시키고 있다(그림 2). 강제연금의 소득대체율이 높은 남

그림 2. 강제연금 소득대체율과 임의 민영연금 가입률



출처: OECD Pensions at a Glance (20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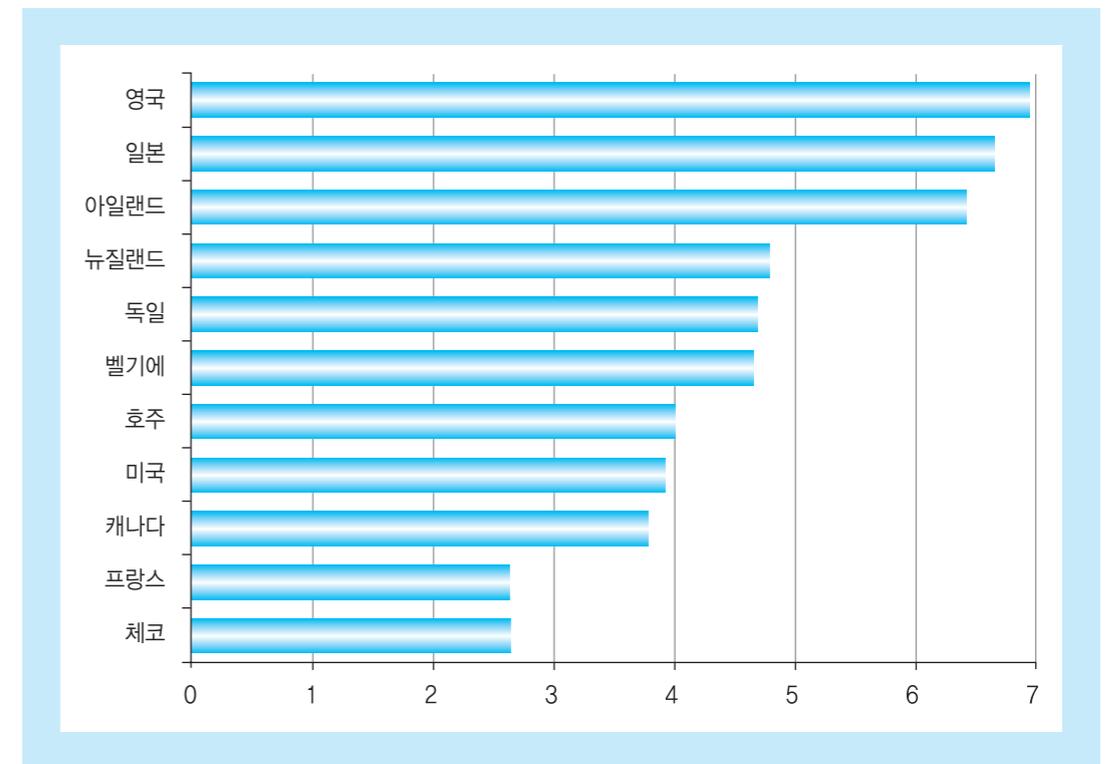
4) 그런데, 과연 왜 OECD 평균이 기준연금이 되어 여기까지의 부족부분을 보충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설득력 있는 설명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각 국가별 적정수준에 대한 정확한 해답을 구하기는 대단히 어렵다. 여기서는 분석의 한 준거틀로 사용되고 있다고 보면 되겠다.

부유럽 국가(그리스, 이탈리아, 스페인 등)와 핀란드, 폴란드의 경우 민영연금 가입율이 10%미만으로 저조하며 강제연금의 소득대체율이 낮은 영미계 국가(캐나다, 영국, 미국 등)와 독일, 일본 등에서 민영연금 가입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OECD 평균 소득대체율에 도달하기 위하여 얼마만큼의 보험료를 민영연금에 납부해야 할까? OECD의 분석에 따르면 2%의 임금상승율과 3.5%의 수익율을 가정하고 20세에 취직하여

연금수급개시연령까지 일을 한다고 전제하면 필요한 보험요율은, 체코와 프랑스의 2.6%에서 공적연금 급여수준이 가장 낮은 영국의 6.9% 사이에 있다(그림 3). 일본의 경우 상대적으로 높은 평균수명으로 인하여 영국 다음의 6.7%를 기록하고 있다. 물론 필요보험요율은 보험료 납부기간, 평균수명과 연금운영수익에 따라 달라진다. 예를 들어 영국의 경우 10년 이상의 보험료 미납입기간이 있으면 보험요율은 10%로 올라가면, 이 기간이 20년이면 15%의 보험료를

그림 3. 퇴직소득부족분 충당을 위한 임의 민간연금 보험요율



출처: OECD Pensions at a Glance (2007).

해외제도 하이라이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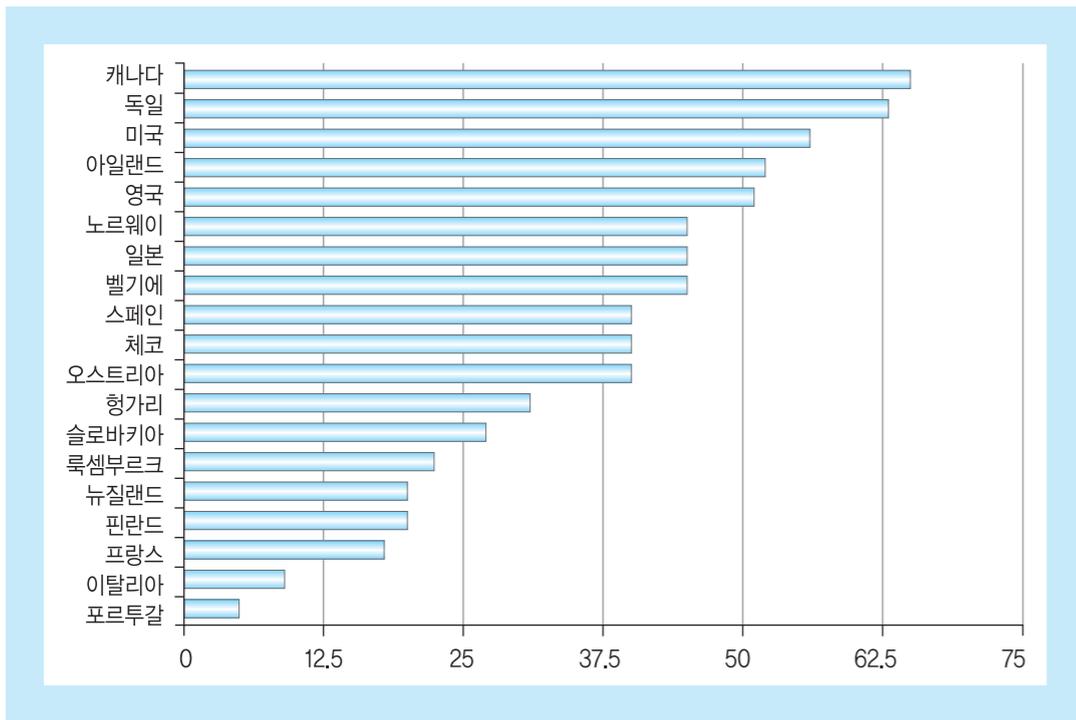
남은 기간동안 납부해야 한다.

3. 민영연금의 운영 현실<sup>5)</sup>

현실은 민영연금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이론을 따라가고 있을까? 민영연금은 가입 강제여부와 운영주체에 따라 강제 민영연금, 기업연금,

개인연금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30개 OECD 국가 중 11개 국가에서 강제방식의 민영연금이 운영되고 있으며, 이 경우 대부분 가입율은 90%를 상회한다<sup>6)</sup>. [그림 4]는 강제연금을 제외한 임의연금(voluntary pension)의 가입율을 보여주고 있는데, 독일, 아일랜드, 영국, 미국은 가입율이 50%를 상회하며, 기업(사용자)이 제공하는 연금과 개인연금이 주요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벨기에, 일본, 노르웨이에서의 임의 민영연금 가입율은 45% 정도이며, 핀란드, 이탈리아, 포르투갈, 스페인의 경우 10% 미만이 가입하고 있다. 11개 국가에 대한 분석에 따르면 평균적으로 전체 근로자의 절반가량이 민영연금에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으며, 이렇듯 공적연금에 비하여 낮은 가입율은 주로 저소득층에서 낮은 가입율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그림 4. OECD 국가의 임의 민영연금 가입율



출처: OECD Pensions at a Glance (2007).

5) 여기에서 제시된 자료는 OECD Pensions at a Glance (2007)에 의존하고 있는데, 해당 문헌은 자료수집의 어려움으로 제시된 수치들이 확정적인 것이 아님을 밝히고 있다.  
6) 자세한 내용은 붙임 1을 참조.

Social Services Highlight

에, 일본, 노르웨이에서의 임의 민영연금 가입율은 45% 정도이며, 핀란드, 이탈리아, 포르투갈, 스페인의 경우 10% 미만이 가입하고 있다. 11개 국가에 대한 분석에 따르면 평균적으로 전체 근로자의 절반가량이 민영연금에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으며, 이렇듯 공적연금에 비하여 낮은 가입율은 주로 저소득층에서 낮은 가입율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임의 민영연금에 대한 가입율은 연령별, 소득별로 차이가 있다. 청년층의 가입율은 대단히 낮으며, 35~44세 또는 45~54세에서 가장 높은 가입율을 보이다가 이 연령층을 넘어서면 가입율은 다소 떨어진다. 6개 국가를 대상으로 하여 소득별 가입율을 살펴본 OECD 분석에 따르면 하위 10% 소득계층의 가입율은 독일의 예외적인 40%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10~20%에 그쳤다. 가입율은 소득이 높아질수록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대부분의 국가에서 상위 70% 소득계층부터 가입율은 70%를 상회하고 있다.

민영연금 가입율을 다른 측면에서 살펴보자. 급여지급을 계산 방식에 따라 민영연금은 확정기여(DB)와 확정급여(DC) 방식으로 분류할 수 있다. 확정급여가 주류를 이룬 과거와 달리 대부분의 국가에서 확정기여방식으로 전환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연금수준이 운용수익에 따라 변동되어 수익을 변동에 따른 위험이 가입자 개인에게로 전가하고 있다. 확정기여 연금가입자가 증가 [캐나다 9%('93)→15%('03), 미국 64%('95)→71%('04)] 하고 확정급여방식은 축

소 [영국: 23%('89)→12%('03)] 되고 있으며, 대부분의 신규가입자들은 확정기여방식에 가입하고 있다.

실제 수령 민영연금 수준에 큰 영향을 미치는 보험료 납입 실태를 보면, OECD 7개 국가들에서 민영연금 납입 실제 보험요율은 차이가 크며 이에 따른 소득대체율 차이도 크다. <표 1>의 맨 우측 칸은 실제로 납입되고 있는 보험료 수준을 추정한 숫자를 보여주고 있다. 아일랜드에서 실제 납부하는 민영연금 보험요율은 10%에서 달하며, 체코의 경우는 3%이다. 이 표에 의하면 아일랜드의 경우 임의 민영연금을 포함할 경우 소득대체율이 OECD 평균을 상회하는 73.3%에 달하며, 10년간의 공백기간에도 불구하고 소득대체율은 61.9%로 평균 이상이다. 표에서 보듯이 다른 많은 나라에서도 일정 수준의 보험료 납입이 유지될 경우 부족한 강제연금을 보완하는 큰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4. 민영연금 가입율을 높이기 위한 OECD 국가들의 정책적 노력

앞에서 보았듯이 공적연금의 수준을 낮추는 것이 자연스럽게 민영연금 가입율이 늘어나는 것으로 이어질 수 없다. 국민들이 연금개혁의 의미를 인식하지 못할 수 있고, 인식한다고 하더라도 퇴직이란 먼 훗날의 일로 치부해 버릴 수도 있다. 또는 가입하고 싶어도 방법을 모를 수도 있다. 이하에서는 민영연금 가입율을 높이기 위

표 1. 강제연금과 임의민영연금을 포함한 소득대체율

	소득대체율 (%)				보험요율
	강제연금	임의 민영연금			
		20년 미납입	10년 미납입	평생 납입	
벨기에	40.4	48.3	52.3	57.1	4.25%
캐나다	43.9	55.0	63.2	72.6	8.5%
체코	49.1	53.7	56.3	59.3	2.8%
독일	39.9	47.5	51.4	56.0	4%
아일랜드	32.5	51.8	61.7	73.3	10%
영국	30.8	47.9	56.8	67.0	9%
미국	41.2	60.7	70.2	81.2	9%

출처: OECD Pensions at a Glance (2007).

한 기본적인 전략과 최근 각국에서 채택한 정책들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1) 기본 전략<sup>7)</sup>

가장 손쉬운 방법은 민영연금 가입을 강제화(compulsion)하는 것이다. 호주,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스위스에서 채택하고 있으며, 헝가리, 폴란드, 슬로바키아, 스웨덴 등에서 공적연금의 일부를 대체하는 방식으로 도입되었다. 효과적인 방법이기는 하나, 필요성에 대한 몇가지 의문사항이 제기된다. 첫번째는 적정 보험요율을 찾기가 어렵고 보험요율이 높을 경우 현재소비의 상당부분을 희생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정말 필요한 자녀교육에 대한 투자 등이 어렵게 될 수 있다. 아울러 연금외에 부동산 투자 등 다른 노후 소득 확보 수단에 대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방

해한다.

두번째 방법은 일정기간의 보험료 납입, 연금 방식으로만 수급 등을 조건으로 하여 세제혜택(tax incentives)을 부여하는 것이다. 많은 국가에서 광범위하게 이용되고 있는 방법으로 OECD 국가 평균적으로 보통의 금융상품에 비하여 민영연금에 대하여는 최소한 보험료의 10%, 평균적으로 20% 이상의 혜택이 주어지고 있다. 그러나 효과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OECD의 분석에 따르면, 세제혜택과 민영연금 가입율과의 상관관계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민영연금 가입율이 높은 나라들과 적은 나라들간 세제혜택의 차이가 그리 크지 않다는 것이다. 많은 나라에서 민영연금에 대하여 주어지는 세제혜택에 따라 늘어나는 가입율은 사실상 기존의 다른 저축 수단, 예를 들면 저축예금 등에서 단순히 이전되는 것일 수 있다<sup>8)</sup>. 다른 문제점은 주로 소득공

7) 이에 관한 내용은 다음의 OECD 자료를 주로 참고. "Ensuring an adequate coverage of private pensions: what policies work? DELSA/ELSA/제1(2007) 10."

제(tax deduction)의 형태를 취함에 따라 세금 부담이 적은 저소득층은 혜택을 크게 받지 못하고 고소득층이 주된 수혜자가 된다는 것이다<sup>9)</sup>.

세번째 방법은 민영연금에 대한 접근을 용이하게 하는 것이다. 영국의 사례를 보면, 10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대기업의 경우 95% 이상의 근로자가 민영연금에 가입하고 있는 반면, 25명 미만의 중소기업은 그 비율이 50% 정도에 그쳤다. 이러한 차이는 민영연금 제도를 가지고 있는 대다수의 기업이 대기업이라는 점과 중소기업은 민영연금 제도를 운영할 여력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는 점에 기인한다. 중소기업 사업주가 민영연금 제도를 운영하기 쉽게 하기 위하여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방법이 시도되고 있다. 네번째 방법은 경제교육(financial education)을 통하여 노후보장을 위한 민영연금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하는 방법이다. 아일랜드에서 최근 적극적인 경제교육(national awareness campaign)을 펼치고 있는데 연금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특히 25세에서 35세 사이의 연령대에서 개인퇴직계정 가입율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마지막 방법은 준강제(soft compulsion)이다. 영국과 미국의 일부 기업에서 사용되고 있는 이 방법은 근로자를 일단 연금제도에 자동가입

(automatic enrolment)하게 한 후 일정한 기간내에 탈퇴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가입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미국과 영국에서 이 방법은 개별 기업에는 상당히 효과적이어서 이 방법을 적용한 후 가입율이 상당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만, 현재 이 방법을 국가 전체적인 차원에서 채택한 나라는 최근의 뉴질랜드가 유일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어떠한 효과가 나타날지는 두고 보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2) OECD 국가들의 최근 개혁 동향

(1) 영 국<sup>10)</sup>

영국은 2006년에 대대적인 연금개혁을 실시하였고 그 중심에는 준강제 방식의 개인연금(personal accounts) 제도 도입이 있다. 2012년부터 시행 예정인 이 제도는 일정수준 (£5,000-£33,000)의 소득이 있는 근로자가 소득의 4%를 보험료로 납부하고, 사용주는 최소 3%의 보험료를 부담하는 것으로 설계되어있다. 사용자가 부담할 나머지 1%는 정부에 의한 소득공제(tax relief) 형태로 제공될 예정이다. 사용주의 부담분 3%는 시행초기부터 매년 1%씩 단계적으로 도입되며,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별도의 재정

8) 이에 대하여 고소득층의 경우에는 다른 저축으로부터의 이전이 주를 이루나, 저소득층의 경우 잘 설계된 세제혜택이 있을 경우 저축을 실질적으로 증가시킨다는 반론이 있다. 다음 문헌을 참조. Esther Dufo, William Gale, Jeffrey Liebman, Peter Orszag, and Emmanuel Saez, "Savings Incentives for Low- and Middle-Income Families: Evidence from a Field Experiment with H&R Block," Retirement Security Project 2005-5, May 2005.  
 9) 따라서, 저소득층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기 위하여는 세액공제(tax credit)나 매칭지원 방법이 낫다고 할 수 있다.  
 10) 자세한 것은 영국 노동연금부의 연금개혁 보고서 참조. [http://www.dwp.gov.uk/pensionsreform/pdfs/white\\_paper\\_complete.pdf](http://www.dwp.gov.uk/pensionsreform/pdfs/white_paper_complete.pdf)

해외제도 하이라이트

지원 또는 단계적 도입기간의 연장이 검토되고 있다. 자동가입(automatic enrolment) 제도에 따라 근로자는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한 자동적으로 가입하게 되며, 근로자가 개인연금외의 다른 연금제도에 가입하는 경우 사용자 3% 보험료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이 제도에는 자영업자를 포함한 비 봉급생활자들도 가입이 가능하다. 영국 정부는 개인연금 운영비용이 장기적으로 개인연금계좌 금액의 0.3%를 넘지 않도록 설정하여 가입자의 최대 수익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영국정부는 총 8%의 보험료에 기반한 이 민영연금제도가 기초연금 등의 공적연금과 함께 장기적으로 45%의 소득대체율이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다.

(2) 뉴질랜드

뉴질랜드는 신규 노동자는 보수의 일부를 개인연금 구좌에 납입하는 개인연금저축(KiwiSaver) 제도를 2007년 8월에 도입하였다. 이는 상당히 관대한 기초연금의 존재로 인하여 20%에도 못 미치는 뉴질랜드 민영연금 가입율을 올리기 위한 것이다. 2007년 8월부터 직장생활을 시작하는 신규노동자는 보수의 4% (8% 선택 가능)를 국세청에 보험료로 납부하는 개인연금저축 제도에 자동적으로 가입하게 된다. 가입 근로자는 자동가입후 2주부터 2달까지 개인연

금저축제도에서 탈퇴하는 것이 가능하며, 신규 노동자외의 기존노동자와 자영업자도 가입할 수 있다. 현재 뉴질랜드 정부는 사용자 근로자의 보험료 납부에 상응하게 근로자 총보수의 4%를 연금 보험료로 추가 납입하도록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다. 관련 법이 통과될 경우 사용주는 2008년 4월 1%에서 시작하여 매년 1%씩 증가하여 2011년에는 4%의 보험료 납부 의무를 지게 된다. 다만, 사용주의 보험료 납부 부담은 근로자 1인당 20달러 (일주일 당)의 상한하에서 정부가 제공하는 세액공제 (tax credit)에 의하여 상당부분 완화된다.

뉴질랜드 정부는 이 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가입자에게 많은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우선 근로자가 개인연금 가입시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1,000 달러의 가입장려금(kick-start payment)을 지급하고 보험료 납부에 상응하여 연간 최대 1,043 달러(주당 20달러)의 조세 크레디트를 부여한다. 그밖에 연금 구좌 운영비용과 관련 연간 40 달러의 보조금 지급과 첫주택 구입 장려금 (5년 가입시 5,000 달러) 지급 등 다양한 혜택이 신규 가입자들을 기다리고 있다.

(3) 독 일

독일은 그간 소득비례연금을 중심으로 한 공적연금제도 위주의 연금제도를 운영해왔다. 그

Social Services Highlight

러나, 2001년 Riester 개혁으로 개인연금저축(Riester-Rente) 제도와 기업단위 보수 전환 연금저축(salary-conversion plan) 제도를 장려하기 위한 정책을 도입함으로써 연금제도 운영의 패러다임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이는 20%를 넘는 보험료 부담으로 운영되는 공적연금 위주의 연금체제를 더이상 유지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 나온 것이다. 정부가 인정한 연금방식(일시불 방식 제외)의 민영연금 제도에 가입할 경우, 직접적인 저축 보조금(savings subsidy) 또는 간접적인 조세 감면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강제가 아닌 임의제도이기 때문에 근로자 요구시에만 사용자가 민영연금 제도를 운영할 의무가 있으나, 참여율이 '02년의 9%에서 '04년 50%로 대폭 증가하였다. 유인(incentive)으로서 저축 보조금은 가입자 당사자에 대한 기본(basic) 보조금과 아동 수당이 지급되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아동(child) 보조금으로 분류된다. 표가 보여주듯이 연도별로 보험요율이 올라감에 따라 보조금의 액수도 올라가는 것으로 설정되어 있다. 보조금 혜택을 받기 위하여는 일정한 수준 이상의 보험료를 납부해

야 하고, <표 2>에 정해진 보험요율보다 실제 납부율이 낮을 경우 보조금은 삭감된다. 보조금은 맞벌이 부부가 보험료를 각자 낼 경우 두 사람 모두 기본보조금 혜택이 가능하며, 전업주부 역시 남편이 보험료 납부시 혜택 가능하다. 아동 보조금은 여성(mother)에게 지급된다.

보조금 대신 세금과 관련한 소득 공제 (tax deduction) 혜택이 가능하다. 납부한 보험료가 '특수수당 (special allowances)'으로 인정되어, 소득세 부과대상에서 공제가 된다. 최대감면가능액은 2006년 연 1,575유로, 2008년 연 2,100유로 설정되어 있는데 평균소득 이상의 고소득층은 보조금보다는 이 제도에 의하여 더 혜택을 받게 된다. 관련 분석에 따르면 보조금과 세금 혜택에 따라 저소득 가정은 납부하는 보험료에 버금가는 혜택이 부여되며, 고소득자 역시 보험료의 40~50%에 해당하는 혜택을 받는 것으로 추계되고 있다. 장기적으로 민영연금은 전체 연금급여에서 40%가량을 차지하게 될 것이며, 이에 따라 감소한 공적연금 급여의 상당부분을 보충해 줄 수 있을 것이다.

표 2. 보험요율에 따른 연도별 저축보조금

연 도	보험요율	기본보조금/유로, 년	아동보조금/유로, 년
2002	1%	38	46
2003	2%	76	92
2006	3%	114	138
2008	4%	154	185

11) 자세한 내용은 Your introduction to Kiwisaver, Inland Revenue (2007) 참조.  
 12) Borch-Supan, A. and Wilke, C (2006), 'Reforming the German Pension system' 참조.  
[http://www.rand.org/labor/aging/rsi/rsi\\_papers/2006\\_axel1.pdf](http://www.rand.org/labor/aging/rsi/rsi_papers/2006_axel1.pdf)

(4) 미 국

미국은 개인연금·기업연금 가입 장려를 위하여 저소득층과 중산층을 위한 세액공제(Savers' Credit) 제도를 '02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일정 소득 이하의 근로자가 401(k) 등의 기업연금, 개인퇴직계좌(IRAs) 등의 개인연금 등에 가입시 소득수준별로 연간 최대 1,000 달러 한도 내에서 납부한 보험료에 상응하여(1달러 납부시 1달러) 10~50%의 차등적인 감면 혜택을 부여한다(표 3). 이 제도는 모든 소득계층에 동일한 감면을 부여시 한계세율이 낮은 저소득 계층보다는 높은 고소득계층에게 유리하게 작용함을 고려하였다. 2001년에 경제성장 및 조세감면 조화법(Economic Growth and Tax Relief Reconciliation Act of 2001)에 따라 한시적으로 도입되어 2006년 연금보험법(Pension Protection Act of 2006)에 의하여 영구화되었다. 표 3이 보여주듯이 저소득층에게는 50%의 감면율이 적용되고 일정 수준 이상의 고소득층에게는 10%의 낮은 감면율이 적용된다. 제도 도입후 저소득

층을 포함하여 가입율이 대폭 증가한 것으로 기업연금 운영회사 등에서 평가하고 있다.

세액공제외에 미국 정부는 1998년부터 민영연금의 자동가입(auto enrolment) 제도를 장려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하고 있다. 근로자의 별도의 동의가 없어도 사용자가 보수에서 보험료를 공제할 수 있게 하는 등의 제도적 개선을 통하여 근로자가 별도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한 자동으로 가입한 것으로 간주되고, 직장을 옮길 경우에도 새로운 직장의 사용자가 운영하는 연금제도로 자동으로 옮겨주는 자동가입 제도를 적용하는 확정기여형 401(k) 연금의 비중이 2003년의 8.4%에서 2005년에는 16.9%로 대폭 증가하였다. 현재 이를 개인퇴직계좌(IRAs) 에도 확대하는 논의가 진행되고있다.

이 외에 아일랜드는 개인연금저축계좌(Personal Retirement Savings Accounts: PRSAs)의 활성화를 위하여 자동가입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PRSAs 가입율을 올리기 위한 정부의 1:1 보험료 매칭 지원 등의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표 3. 소득수준에 따른 세금감면율

총소득		감면율 (%)	세금감면 (\$2,000 보험료납부)	세후비용 (\$2,000 보험료납부)
부 부	독 신			
0~30,000	0~15,000	50	1,000	1,000
30,001~32,500	15,001~16,250	20	400	1,600
32,501~50,000	16,251~25,000	10	200	1,800

13) 다음의 논문을 참조.  
[http://www.brookings.edu/~media/Files/rc/papers/2005/03saving\\_gale02/20050310orszag.pdf](http://www.brookings.edu/~media/Files/rc/papers/2005/03saving_gale02/20050310orszag.pdf)

5. 맺으며

금년에 이루어진 연금개혁이 중요한 성과임은 분명하지만, 하지만 아무도 이번 연금개혁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는 믿지 않으며, 많은 이들은 차기 정부 출범후 또 한번의 홍역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이 경우 급여수준이 올라갈 가능성은 거의 없으며, 또 한번의 급여삭감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단순한 재정 안정 측면에서 이는 바람직할 수 있으나, 노인빈곤방지과 노후의 일정한 생활수준 보장이라는 연금제도 본연의 의미는 많이 퇴색할 수 있다. 이를 보완할 수 있는 것이 민영연금이다. 다만, 주목해야 하는 것은 선진국의 사례에서 보듯이 민영연금 활성화가 단순히 개인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서는 효과가 없다는 것이다. 자동가입 제도 도입 등의 제도개선이든 세제혜택이나 보조금 지급이든 국가의 적극적인 정책적 개입이 요구된다.

2007년 연금 개혁 후 우리나라의 공적 연금수준(40%)은 OECD 평균 이하로 노후 소득보장을 위한 민영연금 활성화가 절실하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개인연금저축제도를 가지고 있으며, 2005년에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하여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하였다. 퇴직연금 제도는 기업단위의 강제 민영연금의 일종으로 가입

율이 증가할 경우 국민연금 수준 하락의 보완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대부분 선진국에서 개인별로 가입하는 개인연금보다는 회사(사용주)를 통하여 직장별로 조직 운영하는 기업연금 방식이 효율적이라고 보고 있다. 우리나라 퇴직연금 가입율은 2007년 8월 현재 5.2%로서 아직까지는 기존의 퇴직금 제도가 유지되는 곳이 다수이므로, 제도개선과 충분한 유인책을 통하여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현행 기업연금은 노사간 합의에 의하여 기업단위로 도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신규 근로자부터 자동가입 제도를 적용하고 기존근로자의 개별 가입을 허용하는 쪽으로 제도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미국처럼 소득계층별로 세제혜택을 차등 적용하여 저소득층의 참여 유인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정부로부터의 직접적인 복지혜택이 미미한 우리로서는 독일식의 직접적인 보조금 지원방식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한국적 상황에서는 간접적인 세제지원보다 현금으로 직접 이루어지는 정부의 매칭지원 방식이 제도 활성화에 더 효과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개인연금 등 기타 임의 민영연금의 보험요율과 연금액은 수익율 등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에 의하여 좌우된다는 점에서 가입자에 대한 경제교육 강화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GSST](#)

해외제도 하이라이트

〈붙임 1〉 민영연금 유형, 가입율과 보험료율

	가장 큰 연금			두번째로 큰 연금		
	제도	가입율	보험료	제도	가입율	보험료
호주	MO/P	>90%	9%			
오스트리아	VO	35%	1.5-2%	VP	10%	-
벨기에	VO	40-50%	1-5%			
캐나다	VO	39%	8.5%	VP	50%	-
체코	VO/P	40%	2.8%			
덴마크	MP	>90%	1%	QMO	>80%	10.8-17%
핀란드	VP	15%	3%	VO	7%	2%
프랑스	VO	10%		VP	8%	
독일	VO	57%	2-4%	VP	13%	2-4%
그리스	VO/P	negligible	-			
헝가리	MP	58%	8%	VO/P	31%	5%
아이슬란드	MO	>90%	10%			
아일랜드	VO/P	52%	10%			
이탈리아	VO	8%	2.35%	VP	2%	-
일본	VO	45%				
한국	VO	negligible				
룩셈부르크	VO	20%	-	VP	5%	4%
멕시코	MP	31%	6.275%			
네덜란드	QMO	>90%	-			
뉴질랜드	VO	20%	-			
노르웨이	MO	>90%	2%	VO	45%	-
폴란드	MP1	49%	7.3%	VO/P	negligible	-
포르투갈	VO	4%	3%	VP	1.5%	-
슬로바키아	MP1	45%	9%	VP	27%	5.4%
스페인	VP	40%	-	VO	10%	-
스웨덴	MP	>90%	2.5%	QMO	>90%	2%
스위스	MO	>90%	7-18%			
터키	VO/P	negligible	-			
영국	VO	43%	9%	VP	16%	-
미국	VO	47%	9%	VP	17%	

주: M = 강제, O = 기업 (사용자 운용), P = 개인, QM = 준강제 (단체협약으로 적용범위 결정), V = 임의